『관광문화연구』 논문심사 규정

(2008년 10월 24일 제정, 2011년 1월 30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관광문화연구에 투고한 연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논문 (research article)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심사대상 논문결정)

1.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는 투고자 및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2. 투고논문 중 관광문화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 단, 반송할 경우에는 논문투고 접수불가 사유를 서면(이메일 등)으로 제시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투고와 접수)

1. 논문은 연중수시로 홈페이지의 원고투고 게시판을 통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2. 논문투고 접수일자는 위원회에 투고논문이 접수되고, 논문 심사료가 입금된 시점으로 한다.
3. 투고된 모든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4. 논문투고시 논문 심사료 10만원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논문원고와 심사료가 입금되어야 논문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5. 투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논문 접수일자 및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서면(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지한다.

제5조(논문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1.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3인의 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함)은 논문 1편당 3인 이상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단, 외국어로 투고된 논문은 그 해당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연구노트는 원칙적으로 2인 익명심사를 하며, 본 학회지의 편집양식에 준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분야에 적합한 전공자로 하되,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3. 투고논문의 이해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이해 관계가 없는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분야를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통보하며, 심사가 완료되어 논문심사 평가서가 도착하면 논문 1편당 논문 심사료 2만원을 송부한다.
6.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심사관련 사항에 관한 의사교환은 위원회의 중계를 통해서만 인정

된다.

7. 심사위원 및 필자에 대한 성명과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임무 및 대체)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논문심사를 위촉 받은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 평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이 위원장에게 사전연락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심사위원은 '소폭 수정후 게재가' 또는 '중폭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할 경우 수정/지적사항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논문 심사평[세부 수정/지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5.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논문심사 평가서를 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심사위원을 대체하여 그 논문의 심사를 제3의 다른 심사위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논문심사과정 및 결과통지)

1.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심사위원 및 논문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은 반드시 익명으로 한다.
2. 예비심사가 완료된 후, 위원장은 논문심사 평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보완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서면으로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후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된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수정/보완된 내용과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제3] 심사자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
5. 위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만 관광문화연구에 게재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최종 확정된 논문이 수록된 파일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수정후 게재가'는 논문 투고자가 심사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면 게재가 가능한 반면, '수정후 재심' 및 '게재 불가'는 논문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경우에도 다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7. 시일이 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자 이외 편집위원 3인(위원장 포함)의 협의에 의해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8. 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을 최초로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심사결과와 논문 게재여부'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심사위원의 수)

1.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투고논문 분야의 전문가(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투고논문 1편당 3인이 심사한다.
2. 관광문화연구소주최의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술관련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이 발표 중 지적

사항을 수정한 후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 3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는 생략하고, 1명의 심사자의 심사결과가 게재불가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후 논문게재 확정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단, 게재논문집에는 3인 익명심사필을 기입한다.

제9조(논문심사 및 게재여부결정기준)

논문의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하여 5점 척도를 통해 평가한다.

①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연구윤리준수 여부

② 연구내용의 참신성 및 전개의 명확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선행연구 인용과 참고문헌의 일치성

⑤ 이론과 실무분야의 기여도

⑥ 논문투고형식의 일치성

	매우 미흡		보 통		매우 우수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연구윤리준수 여부	①	②	③	④	⑤
연구내용의 참신성 및 전개의 명확성	①	②	③	④	⑤
연구방법의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선행연구 인용 및 참고문헌의 일치성	①	②	③	④	⑤
이론과 실무분야의 기여도	①	②	③	④	⑤
논문투고형식의 일치성	①	②	③	④	⑤

제10조(심사판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① 무수정 게재 가(25점 이상), ② 소폭 수정 후 게재 가(20-24점), ③ 중폭 수정 후 게재 가(15-19점), ④ 수정 후 재심(10-14점), ⑤ 게재 불가(9점 이하) 중 하나로 판정하며, 최종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상기 6가지 세부평가기준을 토대로 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며, 판정은 ① 무수정 게재 가(25점 이상), ② 소폭 수정 후 게재 가(20-24점), ③ 중폭 수정 후 게재 가(15-19점), ④ 수정 후 재심(10-14점), ⑤ 게재 불가(9점 이하)의 5등급으로 한다. 평가자의 착오나 자의성이 없도록 위 분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무수정 게재 가: 연구 방법, 분석 내용, 결론 등 전반적인 내용의 수정이 필요없는 완전한 논문을 뜻한다. 다만 단어 기술상의 미미한 실수 등 간단히 문맥을 고칠 수 있거나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는 논문은 '무수정 게재 가'로 판정한다.

   ② 소폭 수정 후 게재 가: 연구 방법, 분석 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적어도 얼마간의 수정노력이 요구되는 논문, 혹은 방법·내용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문장 표현상의 잘못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 '소폭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한다.

   ③ 중폭 수정 후 게재 가: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 결과해석 상 단시간 내에 고칠 수 없는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어 장시간 동안 수정에 요구되는 논문으로서,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 '중폭 수정후 게재 가'로 판정한다.

④ 수정 후 재심: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 상 꽤 중대한 오류(예: 표본추출상의 중대한 과오, 연구기법 상 중대한 과오로 모형이 새로이 구성·추정되어야 하는 경우, 논리 전개상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경우 등)가 발견되어 필자가 이를 수정하였더라도 다시 심사하여 그 타당성·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⑤ 게재 불가: 연구문제, 가설, 연구접근 방법 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인의 수정 노력에 관계없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 혹은 게재로 인해 본 학회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⑥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 이상으로 판결된 논문은 게재가 불가하다.

제11조(부실한 심사반영)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심사 이의신청)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이름 및 논문심사 관련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단, 논문심사 관련사항이 공개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해당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제14조(증명서발급)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논문게재거부 및 투고제한)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수정/지적사항을 합당한 이유없이 수정이나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논문 편집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논문 게재여부의 최종판정 결과에서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최종판정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제목]로는 논문을 재투고를 할 수 없다.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제정) 이 규정은 제정한 날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수정한 날 (201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